

효율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조직 개선방안

2009.12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
II. 재난안전관리조직의 재설계를 위한 방법 및 유형화	3
1. 재난 및 안전의 의미 및 대상	3
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기능 및 역할	6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방식	8
4. 재난안전관리조직의 재설계 방법 및 유형화	10
III.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조직의 현황 및 문제점	14
1. 재난안전관리조직의 현황	14
2. 재난안전관리조직의 문제점	26
IV.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조직의 재설계 방안	28
1. 재난안전관리조직의 재설계를 위한 사례의 선정	28
2.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조직의 재설계 방안	29
V. 결론	4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재난·안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개편 시 재난안전업무 총괄할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신설하였음
 -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난안전에 대한 사고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불안 심리는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안전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국민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의 총괄 조정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현 정부의 재난 및 안전정책 의지가 지방에 착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는 격무 부서로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비선호 부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선순위에서도 재난안전관리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음
- 따라서 중앙의 재난안전정책이 지방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기능 및 조직체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관련 부서는 조직 체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난안전 관련 부서가 재난안전 기능을 통괄하고 조정할 정도의 조직적인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안전 관련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안전한 나라 만들기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조직체계를 효율적으로 재구축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련 조직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난안전 관련 조직이 효율적으로 재난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설계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본 연구의 대상은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련 부서이며, 먼저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관련 부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함
 -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재난안전 관련 조직 현황을 분석
-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재난안전관리 조직의 특성을 파악
 - 기초자치단체의 유형은 총액인건비제 산정 시의 유형을 기본으로 하되, 군의 경우 5만 이상과 5만 미만으로 구분함
 - ※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일반시, 도농복합시, 5만 이상 군, 5만 미만 군,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등 7개 유형으로 분류
-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안전조직에 대한 현황 및 특성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재난안전관리 관련 조직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함
- 마지막으로 현황 분석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각 유형별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재설계 방안을 제시함

II. 재난안전관리조직의 재설계를 위한 방법과 유형화

1. 재난 및 안전관리의 의미 및 대상

□ 재난의 정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 참고로 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규정하고 있음(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의미

- 재난관리에 대한 정의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전관리에 대한 정의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안전관리"라 함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의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의 대상은 법적 근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책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상의 대책, 그리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의한 재난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책

1. 풍수해대책	9. 해상재난대책
2. 설해대책	10. 방사능방재대책
3. 가뭄재난대책	11. 전기·유류·가스재난대책
4. 지진재난대책	12. 폭발·대형화재대책
5. 해일대책, 5의2. 황사대책	13. 건축물·통신 등 시설물재난대책
6. 항공재난대책	14. 독극물·환경오염사고대책
7. 철도재난대책	15. 국가기반체계 보호대책
8. 도로재난대책	16. 산업재해대책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상의 대책에 나타난 재난안전관리의 대상
 - 2010년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상의 대책은 다음과 같음

구분	대상
재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풍수해(설해·해일) . 1-2 낙뢰 . 1-3 가뭄 . 1-4 지진 . 1-5 황사 . 1-6 적조 . 1-7 산불방지 . 1-8 교통재난(항공·철도·도로·해상·교통시설) . 1-9 폭발·대형화재 . 1-10 건축물 등 시설물 재난 . 1-11 독극물·환경오염사고 . 1-12 산업재해 . 1-13 해외재난(재외공관등 해외재난·해외재난사상자 지원·해외관광객 안전외 건설현장 안전·북한방문국민안전) . 1-14 재난방송 . 1-15 방재기상
국가기반체계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에너지(전력·가스·석유, 전기·유류·가스) . 2-2 통신망 보호(통신재난) . 2-3 전산망 보호 . 2-4 교통수송(철도·항공·화물·도로·지하철·항만) . 2-5 금융전산시스템 . 2-6 보건의료서비스 . 2-7 원자력 안전(원자력안전·방사능방재) . 2-8 환경(소각장, 매립장) . 2-9 식용수(댐·정수장)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 보행자안전 . 3-2 승강기안전 . 3-3 어린이놀이시설안전 . 3-4 여름철 물놀이 안전 . 3-5 사회복지시설 안전(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보육시설) . 3-6 교육시설안전(학교시설·연구실·유치원시설) . 3-7 유·도선 안전 . 3-8 자전거이용 안전 . 3-9 문화체육시설안전(유원시설·공연장·체육시설) . 3-10 등산사고안전 . 3-11 수상레저안전 . 3-12 문화재안전사고 . 3-13 사이버 안전
전염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 전염병 . 4-2 가축전염병

-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 프로그램(현 정부의 100대 과제 중에 5개 재난안전과제) 역시 재난안전관리의 주요 대상이며, 이러한 국정과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재난안전관리가 실제 지방에 착근될 수 있음

- 국정과제 16 : ‘재난관리체계를 통합하겠습니다’
- 국정과제 17 : ‘깨끗한 물과 공기,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 국정과제 18 :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 국정과제 19 : ‘여성과 어린이가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 국정과제 20 :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기능 및 역할

- 재난 및 안전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제2조)

○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은 재난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집행임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다음과 같음

- 가. 자재의 비축·수급과 장비 및 시설의 확보
- 나. 재난관리교육·훈련 및 홍보
- 다.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관리대상시설의 관리
- 라. 재난응급복구대책
- 마. 주민대피계획
- 바. 재난예보·경보 요령
- 사.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
- 아. 재난구조 및 응급구호장비·시설의 확보
- 자. 방역 등 보건위생 및 부상자 치료대책
- 차. 전기·통신의 긴급소통계획 및 교통수송대책
- 카.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협조
- 타. 재난복구
- 파. 재난예방 사업계획 및 관리대책 등
- 하. 응급조치 일시 사용 장비·인력 현황

○ 결국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음

- 재난의 발생을 방지·완화시키는 예방
- 지역사고 대책본부를 통하여 재난수습의 행정·재정상의 조치와 업무협조

-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구난 활동
- 재난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 시에 주민을 대피, 응급조치 기능
- 지역 내 민간단체나 자원봉사단체와의 연계 체계 구축
- 지역 내외의 인적·물적 자원을 신속하게 재난대응 및 복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관간·기능간 조정
- 언론에 대한 협조와 통제를 통한 주민 재난교육
-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재난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의 지원은 물론 응급의료서비스 시설 이용 등에서 원활한 협조관계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방식

□ 분산관리방식

- 분산관리방식은 재난의 유형별 특징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는 지진, 수해, 유독물, 풍수해, 설해, 화재 등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임
- 따라서 재난 종류별 계획의 마련 및 대응의 책임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 수준에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재난안전관리가 어렵고 책임이 다수의 부서에 분산되어 재난안전 대처능력이 저하될 수 있음

□ 통합관리방식

- 통합관리방식은 재난관리의 모든 단계인 예방, 준비, 대응, 복구활동을 하나의 부서에서 조정 및 통제하는 방식임
- 통합관리방식은 재난대응과정의 유사성, 자원관리의 종합성, 재난정보의 통합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재난안전에 대한 책임이 한 부서에 집중되어 부서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음

□ 분산관리방식과 통합관리방식의 비교

구분	분산관리방식	통합관리방식
성격	·재난유형별 분산관리	·모든 재난을 통합하여 관리
관련부처 및 기관 수	·다수 부처의 단순 병렬	·단일 부처 조정하의 병렬적 다수 부처
책임범위와 부담정도	·재난 유형별 책임 부담 분산	·모든 재난에 대한 책임 부담
활동 범위	·특정 재난에 대한 관리 활동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활동
정보전달	·다원화	·일원화
자원마련과 배분	·복잡	·단순
재난에 대한 인지능력	·단편적	·종합적
선택 국가	·일본, 중국 등	·미국, 독일, 프랑스 등

□ 본 연구의 입장

- 재난안전의 유형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별 관할권이 다르고,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에 대한 대응단계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과 유관기관의 협력 속에서 대응하게 됨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을 효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므로, 통합적으로 재난 및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에서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재조정하고자 함

4. 재난안전관리조직의 재설계 방법 및 유형화

□ 재난안전관리조직 재설계의 방법

- 재난안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의 재설계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형화된 조직 구조의 설계를 의미함
 -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30개 전체 기초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의거 유형화된 기초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직 구조를 의미함
- 조직 재설계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하향적·연역적 접근방법과 상향적·귀납적 접근방법이 활용될 수 있음
 - 하향적·연역적 접근방법은 재난안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규범적 요건들을 도출하고, 이를 조직의 재설계에 반영하는 방법임
 - 상향적·귀납적 접근방법은 기존의 재난안전 관련 업무 처리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여 각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공통적 속성을 도출하고, 이에 입각하여 조직을 재설계하는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조직재설계 방법으로 하향적·연역적 접근방법과 상향적·귀납적 접근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함
 - 즉, 각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재난안전 관련 조직의 공통적 속성을 도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각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재난안전 조직을 재설계하고자 함

□ 재난안전관리조직 재설계를 위한 유형화의 방향

-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조직재설계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유형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유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성 또는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변수를 선정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성 또는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변수로는 “사무 수”와 “사무 량”을 제시할 수 있음
 - “사무 수”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동일한 사무를 처리토록 규정한 것으로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로 나타나고
 - “사무 량”은 동일한 “사무 수”를 갖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변수로서 인구, 면적 및 사무의 처리건수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로 기초자치단체를 유형화하는 작업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총액인건비제 산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작성된 유형화 사례 및 기구 및 정원규정에 제시된 사례를 중심으로 하되,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구 수를 고려하여 분류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제 산출 방식에 의한 유형화

- 총액인건비제를 산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분류한 기초자치단체의 유형은 6개임
 - 동 유형화는 지방자치단체 종류, 인구규모 및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유형 분류를 시도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도농통합시, 군,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총액인건비제 방식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지방자치단체 유형	비고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유형 : 50만 이상시(12개) ■ 2유형 : 50만 미만시(26개) ■ 3유형 : 도농통합시(37개) ■ 4유형 : 군(86개) ■ 5유형 : 특별시 자치구(25개) ■ 6유형 : 광역시 자치구(44개) 	6개 유형

□ “기구 및 정원규정”의 방식에 의한 유형화

- “기구 및 정원 규정”에 제시된 기초자치단체의 유형은 26개임
 - 기구 및 정원규정에 의한 유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인구규모만을 분류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위의 총액인건비제와 달리 행정여건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기구 및 정원규정의 방식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지방자치단체 유형	비고		
기초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룡시 ■ 인구 10만 미만 ■ 인구 10만 미만(도농복합형태의 시) ■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 인구 50만 이상(구 미설치 시) ■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 설치 시) ■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 설치 시) ■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 설치 시) ■ 인구 100만 이상(구 설치 시) 	26개 유형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릉군·옹진군 ■ 증평군 ■ 인구 3만 미만 ■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 ■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 인구 15만 이상 ■ 인구 15만 이상(광역시의 군) 		
	구	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50만 미만 ■ 인구 50만 이상
		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10만 미만 ■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 인구 50만 이상

□ 본 연구의 기초자치단체 유형화 방법

-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사례는 각기 그 목적에 맞도록 설계되어 나름의 논리적 구조를 확보하고 있음
 - 예를 들면, “기구 및 정원 규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기구설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규모에 따른 편차를 가급적 좁게 하고, 총액인건비제 산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산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유형화를 도모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전술한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사례 중 총액인건비제 산정을 위한 유형화 사례를 채택하고자 함
 - 원칙적으로는 조직의 표준모형을 설계하기 위한 작업이므로 “기구 및 정원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기구 및 정원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유형화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기구의 설치범위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단일기능을 대상으로 조직을 설계할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음
- 즉, “재난안전”이라는 단일기능을 대상으로 조직을 재설계할 경우에는 법적 지위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유형화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총액인건비제 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사례를 준용함
- 다만 군의 경우 인구의 편차가 심하고 그 수가 너무 많아 인구를 기준으로 5만 이상의 군과 5만 미만의 군으로 구분하고자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도농통합시, 5만 이상 군, 5만 미만 군,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등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함

III.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조직의 현황 및 문제점

1. 재난안전관리조직의 현황

1) 50만 이상 시

□ 담당 및 인력의 현황

- 50만 이상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담당 및 인력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담당(팀) 수	자치단체 수	총 인원	자치단체 수
1	0	5 이하	0
2	3	6-10	2
3	3	11-15	4
4	4	16-20	2
5	2	21 이상	4
평균 담당	3.42	평균 인원	15.83

□ 과 단위 분석

-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시 본청에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관리과, 또는 재난관리과를 두고 있음
 - 과 명칭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6개 자치단체, 재난관리과를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4개임
 - 기타 도로안전과 1개, 건설방재과 1개 등이 있음

□ 담당(팀) 단위 분석

○ 담당 단위 부서의 수

- 담당을 2개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3개, 3개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3개, 4개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4개, 5개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5개로 나타남
- 50만 이상 시의 경우 평균 3.42개의 담당(팀)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담당 단위 부서의 명칭

- 재난관리 관련 부서의 경우 재난관리담당 7개, 재난예방담당 2개, 인적재난담당 2개, 재난안전담당 1개, 재난복구담당 1개, 자연재난담당이 1개로 나타남
- 안전관리 관련 부서의 경우 안전점검담당 3개, 안전지도담당 1개, 안전도시담당 1개, 재난안전담당이 1개로 나타남
- 민방위 관련 부서의 경우 대부분이 민방위담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함(10개 자치단체)
- 복구 관련 부서의 경우 복구지원담당 6개, 재난복구담당이 1개 자치단체로 나타남
- 방재 관련 부서의 경우 방재담당이 2개, 방재대책담당이 1개의 자치단체로 나타남
- 기타 지역협력담당 1개, 기동점검담당 1개 등이 있음

2) 50만 미만 일반시

□ 담당 및 인력의 현황

- 50만 미만 일반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담당 및 인력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담당(팀) 수	자치단체 수	총 인원	자치단체 수
1	0	5 이하	0
2	9	6-10	10
3	16	11-15	12
4	1	16-20	4
5	0	21 이상	0
평균 담당	2.69	평균 인원	11.81

□ 과 단위 분석

- 50만 미만 일반시의 경우 26개의 자치단체 중 9곳이 시 본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두고 있으며, 7곳이 재난관리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곳은 안전관리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와 비슷한 명칭으로 운영하는 기타 3곳의 경우, 재난민방위과, 재난산림관리과, 재난총괄과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기타 나머지 6곳의 경우 건설과 관련하여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과 명칭으로 건설방재과(3곳), 건설재난과(2곳), 건설안전과(1곳)를 사용하고 있음.

□ 담당(담당, 팀) 단위 분석

- 담당 단위의 부서를 2개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9곳, 3개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16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개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1곳으로 나타남
 - 50만 미만 일반시의 경우 평균 2.69개의 담당(담당, 팀)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담당 단위 부서의 명칭은

- 재난관리 관련 부서의 경우 재난관리가 18개, 재난예방 4개, 인적재난 1개, 재난안전 1개, 재난복구 1개, 재난방재 1개, 재난행정 1개로 나타남
- 안전관리 관련 부서의 경우 안전관리 1개, 안전지도 1개, 안전도시 1개, 지역안전 1개로 나타남
- 민방위 관련 부서의 경우 대부분이 민방위라는 명칭을 사용함(16개)
- 복구 관련 부서의 경우 복구지원 11개, 복구담당 1개, 복구협력 2개로 나타남
- 방재 관련 부서의 경우 방재 3개, 방재 시설 1개, 치수방재 1개로 나타남
- 기타 치수관리 1개가 있음

3) 도농통합시

□ 담당 및 인력의 현황

○ 도농통합시의 재난안전관리 관련 담당 및 인력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담당(팀) 수	자치단체 수	총 인원	자치단체 수
1	1	5 이하	0
2	8	6-10	9
3	15	11-15	12
4	10	16-20	14
5	3	21 이상	2
평균 담당	3.16	평균 인원	14.05

□ 과 단위 분석

- 도농통합시의 경우 대부분의 시 본청에 재난안전(관리)과 또는 재난관리과를 두고 있음 (전체 37개의 자치단체 중 23곳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함)
 - 과 명칭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12개, 재난관리과를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11개임
 - 재난과 관련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재난방재과 4곳, 재난치수과 1곳, 도시재난관리과 1곳, 건설재난관리과 2곳으로 나타남.
 - 기타 나머지 7곳의 경우, 건설과 1곳, 건설방재과 3곳, 안전도시과 1곳, 주민자치과 1곳, 치수방재과 1곳으로 나타남.

□ 담당(담당, 팀) 단위 분석

- 담당 단위의 부서를 1개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1개, 2개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8개, 3개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15개, 4개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10개, 5개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3개임
 - 도농통합시의 경우 평균 3.16개의 담당(담당, 팀)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담당 단위 부서의 명칭은
 - 재난관리 관련 부서의 경우 재난관리가 24개, 재난 2개, 재난안전 3개, 재난행정 3개, 재난재해 1개, 재난총괄 2개, 재난시스템 2개, 재난복구 2개, 재난방재 1개, 재난방재시설 1개, 재해대책 2개, 재해 1개, 재해복구 1개로 나타남.
 - 안전관리 관련 부서의 경우 안전관리 1개, 안전도시 1개, 안전방재 1개, 안전지도 2개, 수상안전 1개로 나타남
 - 민방위 관련 부서의 경우 대부분이 민방위라는 명칭을 사용함(30개), 나머지 두 곳은 민방위재난관리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음.

- 복구 관련 부서의 경우 복구, 1개, 복구지원 14개, 복구협력 2개로 나타남
- 방재 관련 부서의 경우 방재 9개, 방재 복구 1개로 나타남
- 기타 지역협력 2개, 치수 1개, 원전관리 1개, 원전방재 1개, 유류피해지원 1개, 민방위와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팀 1개 등이 있음.

4) 5만 이상 군

□ 담당 및 인력의 현황

○ 5만 이상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담당 및 인력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담당(팀) 수	자치단체 수	총 인원	자치단체 수
1	7	5 이하	3
2	9	6-10	20
3	22	11-15	15
4	4	16-20	4
5	0	21 이상	0
평균 담당	2.55	평균 인원	10.50

□ 과 단위 분석

- 5만 이상인 군은 총 42개 군이며, 이 중 26개 군이 재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또는 재난안전과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건설관련 업무 또는 방재관련 업무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과 명칭으로 재난관리과를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13개, 재난안전과를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7개, 재난안전관리과를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6개, 재난방재과를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2개임

- 건설 업무의 통합하여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건설방재과 5개, 건설재난관리과 3개, 건설재난과 2개, 건설재난안전과 1개이며,
- 이외에 건설교통방재과 1개, 교통재난관리과 1개, 재난수질관리과 1개임
- 기타 민방위 업무를 총무과에 두는 곳이 1개임

□ 담당(팀) 단위 분석

- 담당 단위의 부서를 1개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7곳, 2개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9곳, 3개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22곳으로 가장 많으며, 4개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3곳으로 나타남
- 5만 이상 군의 경우 평균적으로 2.55개의 담당(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담당 단위 부서의 명칭은
 - 재난관리 관련 부서의 경우 재난담당 1개, 재난관리담당 21개, 재난방재담당 3개, 재난안전담당 3개이며, 나머지의 경우 재난관리복구, 재난민방위, 재난복구, 재난예방(2), 재난총괄, 자연재난, 인적재난이라는 명칭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음
 - 민방위 관련 부서의 경우 대부분이 민방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26개), 민방위재난이 2개, 민방위방재가 1곳임
 - 복구 관련 부서의 경우 대부분이 복구지원담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23곳), 복구담당 1개, 복구협력 1곳, 안전복구 1개, 재해복구 1개, 피해지원 1개로 나타남
 - 방재 관련 부서를 담당으로 두고 있는 자치단체는 많지 않으며, 방재담당 4개, 방재협력 1개로 나타남
 - 기타 재해대책 1개, 치수방재, 1개 등이 있음

5) 5만 미만 군

□ 담당 및 인력의 현황

○ 5만 미만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담당 및 인력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담당(팀) 수	자치단체 수	총 인원	자치단체 수
1	8	5 이하	7
2	16	6-10	24
3	16	11-15	10
4	3	16-20	3
5	0	21 이상	0
평균 담당	2.32	평균 인원	8.66

□ 과 단위 분석

○ 5만 미만의 군은 총 44개 자치단체이며, 본청에 재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또는 재난안전과 등 재난 및 안전 업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건설 업무와 통합하여 과를 운영하는 두 가지 형태가 대부분임

- 과 명칭으로 재난관리과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11개, 재난안전관리과를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7개, 재난안전과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1개임
- 건설 업무와 연관하여 재난 및 안전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총 19곳이며, 과 명칭으로는 건설방재과 10개, 건설재난관리과 7개, 건설재난과 2개, 재난건설과 1개이며, 2개의 자치단체는 건설과라는 명칭으로 재난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기타 방재산림과 1개, 산림교통과 1개, 산림방재과 1개 등임

□ 담당(팀) 단위 분석

- 담당 단위의 부서를 1개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8개, 2개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16개, 3개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16개, 4개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3개로 나타남
 - 5만 미만 군의 경우 평균 2.32개의 담당(팀)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담당 단위 부서의 명칭은
 - 재난관리 관련 부서의 경우 재난관리담당을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25개, 재난담당이 1개 자치단체임
 - 기타 재난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담당으로는 재난민방위담당 2개 재난방재담당 3개, 재난안전담당 3개, 재난복구 3개, 재난민방위 3개, 재난시설 1개 등으로 나타남
 - 안전관리 관련 부서의 경우 안전관리담당 1개, 재난안전담당 2개로 나타남
 - 민방위 관련 부서의 경우 민방위담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15개이며, 이밖에 민방위재난 1개, 민방위지원 1개, 생활민방위 1개가 있음
 - 복구 관련 부서의 경우 복구지원담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18개, 복구담당이 2개, 방재복구담당이 3곳 지역복구 1개로 나타남
 - 방재 관련 부서의 경우 방재담당을 신설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3개, 방재관리 1개, 방재시설 1개로 나타남
 - 건설 업무와 연계하여 담당을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건설재난담당 2곳, 건설재난관리 1곳, 건설행정 1곳으로 나타남
 - 기타 비상계획담당 1개, 인력자원 1개, 위기관리 1개, 재해대책 2개, 재해예방 1개 등이 있음

6) 특별시 자치구

□ 담당 및 인력 현황

- 특별시 자치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담당 및 인력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담당(팀) 수	자치단체 수	총 인원	자치단체 수
1	0	5 이하	0
2	12	6-10	11
3	10	11-15	10
4	3	16-20	4
5	0	21 이상	0
평균 담당	2.64	평균 인원	11.44

□ 과 단위 분석

-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대부분 민방위 업무와 재난관리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자치구 25곳 중 23곳이 재난관리업무와 민방위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재난관리업무의 경우 대부분 치수방재과에서 담당(19곳)하고 있으며, 민방위 업무의 경우 대부분 자치행정과(20곳)에서 담당하고 있음
 - 그밖에 민방위 업무를 따로 담당하는 3개의 자치단체의 경우, 과 명칭을 교육진흥과, 주민자치과(2곳)로 사용하고 있음
 -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6곳은 시설안전과(1개), 재난안전관리과(1개), 재난안전치수과(1개), 토목과(1개), 재난치수과(1개), 토목치수과(1개)임
 - 따라서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담당(팀) 단위 분석

- 담당 단위의 부서를 2개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12개, 3개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10개, 4개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3개로 나타남
-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평균 2.64개의 담당(팀)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담당 단위 부서의 명칭은
 - 재난관리 관련 부서의 경우 재난관리가 17개, 재난안전(관리) 4개, 재난복구 1개, 재난예방 1개로 나타남
 - 안전관리 관련 부서의 경우 안전지도 1개로 나타남
 - 민방위 관련 부서의 경우 대부분이 민방위라는 명칭을 사용함(25개)
 - 복구 관련 부서의 경우 복구지원 5개로 나타남
 - 방재 관련 부서의 경우 방재관리 1개, 재난방재 1개로 나타남
 - 기타 지역협력 2개, 수방팀 1개, 지하수 1개, 치수 7(일부분만 재난안전업무임)개 등이 있음.

7) 광역시 자치구

□ 담당 및 인력 현황

- 광역시 자치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담당 및 인력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담당(팀) 수	자치단체 수	총 인원	자치단체 수
1	1	5 이하	1
2	16	6-10	10
3	23	11-15	26
4	4	16-20	6
5	0	21 이상	1
평균 담당	2.68	평균 인원	12.39

□ 과 단위 분석

-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 업무와 민방위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수가 전체 44곳 중 총 10곳으로 나타남.
- 재난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재난관리과와 재난안전관리과, 또는 재난안전과를 두고 있음.
- 과 명칭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과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20개, 재난관리과를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8개임
- 그 밖에, 건설과 (3개), 건설방재과(3개), 건설재난관리과(3개), 건축방재과(1개), 도시안전과(3개), 방재안전과(1개), 시설재난관리과(1개), 재난방재과(1개)가 있음
- 한편, 재난안전업무와 민방위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10곳의 경우, 민방위 업무가 포함된 과의 명칭으로는 자치행정과(1개), 총무과(6개), 행정자치과(1개), 행정지원과(1개), 홍보교육과(1개)로 나타남

□ 담당(팀) 단위 분석

- 담당 단위의 부서를 2개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16개, 3개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23개, 4개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4개임
- 1개의 자치단체는 담당단위 부서 없이 과 수준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음
-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평균 2.68개의 담당(팀)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담당 단위 부서의 명칭은
- 재난관리 관련 부서의 경우 재난관리가 32개, 재난안전 5개, 재난방재 2개, 재난복구 1개, 재난시설 1개, 재난예방 1개, 재난점검 1개, 재난총괄 1개, 자연재난 1개로 나타남.

- 안전관리 관련 부서의 경우 안전관리 2개, 안전예방 1개, 안전지도 1개, 안전협력 1개로 나타남
- 민방위 관련 부서의 경우 대부분이 민방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40개 자치단체), 그밖에 민방위재난 1개, 민방위재난관리 1개로 나타남
- 복구 관련 부서의 경우 복구지원 15개, 복구협력 3개로 나타남
- 방재 관련 부서의 경우 방재지원 2개, 방재시설 1개로 나타남
- 기타 지역협력 1개, 치수관리 1개, 하천관리 1개, 교류협력 1개 등이 있음

2. 재난안전관리조직의 문제점

□ 재난안전관리부서의 명칭과 구조의 다양성

- 기초자치단체내의 재난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 소속, 구조가 다양함
 - 과 및 담당의 명칭이 다양하고, 담당의 소속 역시 다양하게 나타남
 - 재난안전 관련 기능이 여러 과에 분산되어 있음

□ 유사자치단체간 조직 인력의 불균형

- 인구규모가 유사한 기초자치단체간 담당(팀)의 수에 편차가 심하며, 인력의 측면에서도 불균형이 심함

□ 본청 재난안전기능과 일선 소방기능의 연계성 문제

-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기능이 본청과 소방서로 이원화 되어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재난안전 기능을 통괄하고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재난안전관리의 전문성 부족

-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는 전문화된 조직이어야 하며, 일반 부서와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분류
 - 그러나 재난안전관리 부서는 잦은 인사이동과 근무기피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잠시 거쳐 가는 자리로 인식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함

□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기능의 미약

- 재난안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 민간 전문가의 육성, 일반 주민들에 대한 교육 등이 필수적이나 이를 전담하여 추진할 부서나 담당이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의 연계성 및 통합성 부족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행정체계는 지역의 자연재난, 인위재난, 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존재로서 하나의 네트워크 체계로서 구성요소들 간의 효과적인 연계관계를 구축하여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함
- 현재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조직 구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움

IV.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조직의 재설계 방안

1. 재난안전관리조직의 재설계를 위한 사례의 선정

-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총액인건비제 산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작성된 유형화 사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군의 경우에만 인구 변수를 고려하여 5만 이상의 군과 5만 미만의 군으로 구분하여 7개 유형별 재난안전 조직 재설계 방안을 제시함
- 사례의 선정은 우수 안전도시로 선정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되, 자치단체 유형에 우수 자치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인구 수 및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선정
- 사례로 선정된 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음

구분	구분 기준(자치단체 수)	선정자치단체
1유형	■ 50만 이상시(12개)	천안시(안전도시)
2유형	■ 50만 미만시(26개)	과천시(안전도시)
3유형	■ 도농통합시(37개)	익산시(안전도시)
4유형	■ 5만 이상 군(42개)	당진군
5유형	■ 5만 미만 군(44개)	장흥군(안전도시)
5유형	■ 특별시 자치구(25개)	대덕구(안전도시)
7유형	■ 광역시 자치구(44개)	서초구

2.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조직의 재설계 방안

1) 50만 이상 시

□ 기본 방향

- 50만 이상 시의 경우 대부분이 재난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기능의 경우 재난관리에 포함하여 관리하거나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
- 따라서 50만 이상 시의 경우 재난안전 수요가 많으므로 안전관련 기능과 재난관련 기능을 구분하여 2개과를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함
 - 50만 이상 시의 경우 4개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모두 재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또는 재난안전과를 두고 있으나,
 - 담당에 대한 기능 분류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안전 관련 기능은 여러 부서에 분산 관리되고 있음
 - 따라서 재난 및 안전 관련 기능을 분리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생활안전과와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재난관리과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담당의 경우 재난 관련 담당은 자치단체 평균적으로 3.42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관련 기능의 경우 명칭이 상이하고 여러 부서에 혼재되어 관리되어 있음
 -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담당은 재난관리 관련 담당, 안전관리 관련 담당, 민방위 관련 담당, 복구 관련 담당이 많이 설치되어 있음
- 따라서 각 과별로 3개의 담당은 통일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각 과별로 인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1개 또는 2개의 담당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함

- 생활안전과의 경우 생활안전담당, 안전도시담당, 안전관리담당 등 3개의 담당을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안전관리 수요가 많을 경우 안전관리담당 업무를 세분화하여 운영하도록 함
- 재난관리과의 경우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민방위담당 등 3개의 담당을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재난관리 수요가 많을 경우 재난관리담당 업무를 세분화하여 운영하도록 함

□ 50만 이상 시의 재난안전조직 재설계 방안(예시; 천안시)

○ 천안시의 재난 및 안전 관련 부서 현황

- 천안시의 경우 재난관리 기능은 재난관리과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안전관리 기능의 경우에는 여러 부서에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 천안시의 재난 및 안전 관련 주요 부서는 다음과 같음

현행 재난안전 관련 부서	
건설도시국 건설도로과	하천관리팀, 도로정비팀, 도로시설팀
건설도시국 교통과	대중교통팀, 교통시설팀
건설도시국 재난관리과	재난관리팀, 복구지원팀, 민방위팀, 기동점검팀
건설도시국 미래도시개발과	안전도시팀
산업환경국 지역경제과	에너지자원팀
산업환경국 환경위생과	수질팀, 대기팀, 위생정책팀

○ 천안시의 재난 및 안전 관련 조직 재설계 방안

- 천안시의 경우 재난관리 기능과 안전관리 기능을 분리하여 2개의 독립적인 과를 운영하도록 권고

- 생활안전과에는 5개의 담당을 두고, 재난관리과에는 4개의 담당을 둠
- 천안시의 재난안전조직 재설계 방안은 다음과 같음

과명	담당명	주요 기능
생활안전과	생활안전팀	- 생활안전 업무 및 총괄 등
	안전도시팀	- 안전도시 업무 등
	시설안전팀	- 건축물 관련 안전관리 - 도로 관련 안전 등
	환경안전팀	- 환경 관련 안전 - 물 관련 안전 등
	식품위생안전팀	- 식품 및 위생안전 관련
재난관리과	재난관리팀	- 재난관리 업무 및 총괄 등
	복구지원팀	- 재난 복구 업무 등
	재난점검팀	- 재난 관련 점검 업무 등
	민방위팀	- 민방위 업무 등

2) 50만 미만 일반시

□ 기본 방향

- 50만 미만 일반시의 경우 인구 규모가 매우 상이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조직 재설계가 가능함
 - 대부분이 재난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일부 안전관리 기능을 포함하여 1개의 과를 운영하거나,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1개의 과를 운영하고 안전관리 기능은 여러 부서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음
-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난 및 안전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1개과를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함

- 1의 과를 설치 운영할 결루 과의 명칭은 생활안전과 또는 재난안전관리과로 함(본 연구에서는 생활안전과로 명칭 부여)
- 특별히 인구 및 행정 수요가 많은 경우 재난기능과 안전기능을 분리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생활안전과, 재난관리과)
- 4개 이상의 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개의 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
- 담당(팀)의 경우 1개과를 설치할 경우 4개의 담당을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지역의 재난 및 안전 관련 기능 및 수요를 고려하여 재난관리 기능 및 안전관리 기능을 세분화하여 각각 1개 또는 2개의 담당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4개의 담당을 설치할 경우 생활안전담당, 재난관리담당, 안전관리담당, 민방위담당을 설치 운영하도록 함
- 2개의 과를 설치 운영할 경우 50만 이상 시의 조직 재설계 방안 참조하여 조직 재설계를 하되 각 과별로 4개 이하의 담당을 두도록 권고함

□ 50만 미만 일반시의 재난안전조직 재설계 방안(예시; 과천시)

- 과천시의 재난 및 안전 관련 부서 현황
 - 과천시의 경우 재난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기능은 여러 부서에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 과천시의 재난 및 안전 관련 주요 부서는 다음과 같음

현행 재난 및 안전 관련 부서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교통과	교통시설팀
건축과	건축팀
건설과	도로팀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팀, 치수방재팀, 민방위팀

○ 과천시 재난 및 안전 관련 조직 재설계

- 과천시의 경우 재난관리 기능과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1개의 독립적인 과를 운영하도록 권고
- 생활안전과를 두고 3개의 권고 팀 및 2개의 안전 관련 팀 등 5개의 팀을 두도록 함
- 과천시의 재난안전조직 재설계 방안은 다음과 같음

과명	담당명	주요 기능
생활안전과	생활안전팀	- 생활안전 총괄, 안전도시 업무 등
	재난관리팀	- 재난관리 업무 총괄 등
	안전관리팀	- 시설물 관련 안전관리 - 도로 관련 안전 등
	환경식품안전팀	- 환경 관련 안전 - 물 관련 안전 등 - 식품 및 위생안전 관련
	민방위팀	- 민방위 업무 등

3) 도농통합시

□ 기본 방향

- 도농통합시 역시 일반시와 마찬가지로 인구 규모가 매우 상이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조직 재설계가 가능함
- 따라서 도농통합시의 경우 역시 인구규모와 행정수요가 다양하므로 재난 및 안전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1개과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생활안전과), 특별히 행정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안전 기능과 재난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생활안전과, 재난관리과)

- 국이 4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도농통합시의 경우 2개의 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이 3개 이하 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1개의 과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
- 담당(팀)의 경우 2개를 과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과에 3개의 담당을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각 과별로 1개의 담당은 행정 수요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1개의 과를 설치할 경우에는 5개의 담당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이 경우 50만 미만 일반시의 조직 재설계 방안을 참조
- 지역의 재난 및 안전 관련 기능 및 수요를 고려하여 1개의 담당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1개의 과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생활안전담당, 안전관리담당, 재난관리담당, 민방위담당을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기타 1개의 담당은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2개의 과를 설치 운영할 경우 생활안전과에 생활안전담당, 안전관리담당, 재난관리담당, 안전도시담당, 인전관리담당을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민방위담당을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가 많을 경우 추가로 1개의 담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도농복합시의 재난안전조직 재설계 방안(예시; 익산시)

- 익산시의 재난 및 안전 관련 부서 현황
 - 익산시의 경우 재난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재난관리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기능은 여러 부서에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익산시의 재난 및 안전 관련 주요 부서는 다음과 같음

현행 재난 및 안전 관련 부서	
전략산업국 지역경제과	에너지담당
농림환경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위생관리담당, 식품위생담당
건설교통국 건설과	도로관리담당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하천담당
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	교통물류담당

○ 익산시의 재난 및 안전 관련 조직 재설계

- 익산시의 경우 재난관리 기능과 안전관리 기능을 분리하여 2개의 독립적인 과를 운영하도록 권고
- 생활안전과에는 4개의 담당을 두고, 재난관리과에는 3개의 담당을 둠
- 익산시의 재난안전조직 재설계 방안은 다음과 같음

과명	담당명	주요 기능
생활안전과	생활안전담당	- 생활안전 업무 총괄, 안전도시 업무 등
	시설안전담당	- 시설물 관련 안전관리 - 도로 관련 안전 등
	환경안전담당	- 환경 관련 안전 - 물 관련 안전 등
	식품위생안전담당	- 식품 및 위생안전 관련
재난관리과	재난관리담당	- 재난관리 총괄 - 재난 관련 점검 업무 등
	복구지원담당	- 재난 복구 업무 등
	민방위팀	- 민방위 업무 등

※ 국이 3개 이내인 도농복합시의 경우 50만 미만 일반시를 참조하여 1개과를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함

4) 5만 이상 군

□ 기본 방향

- 5만 이상 군의 경우 재난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1개의 과를 운영하거나 건설 등 다른 기능과 연계하여 1개의 과를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5만 이상 군의 경우 재난 및 안전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1개과를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함
- 담당(팀)의 경우 지역의 인구, 수요 등 지역적 실정을 고려하여 4개의 담당을 설치 운영하도록 함
 - 지역의 재난 및 안전 관련 수요를 고려하여 1개의 담당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4개의 담당은 생활안전담당, 재난관리담당, 안전관리담당의 설치 운영을 권고하고, 1개의 담당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예를 들면, 복구지원 업무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복구지원담당을 설치 운영하거나, 안전 관련 업무가 많은 경우에는 안전관리담당을 분리하여 운영함

□ 5만 이상 군의 재난안전조직 재설계 방안(예시; 당진군)

- 당진군의 재난 및 안전 관련 부서 현황
 - 당진군의 경우 재난관리 기능을 교통기능과 연계하여 교통재난관리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기능은 여러 부서에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해양오염사고와 관련하여 배상지원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당진군의 재난 및 안전 관련 주요 부서는 다음과 같음

현행 재난안전 관련 부서	
환경과	환경감시팀, 시설운영팀
건설과	도로관리팀, 지역개발팀
교통재난관리과	교통행정팀, 교통관리팀, 민방위팀, 재난관리팀, 복구지원팀
해양환경오염사고대책단	배상지원팀
보건소	위생팀

○ 당진군의 재난 및 안전 관련 조직 재설계 방안

- 당진군의 경우 재난관리 기능과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1개의 독립적인 과를 운영하도록 권고
- 생활안전과를 두고 3개의 권고 팀, 복구지원팀, 안전 관련 팀 등 5개의 팀을 두도록 함
- 당진군의 재난안전조직 재설계 방안은 다음과 같음

과명	담당명	주요 기능
생활안전과	생활안전팀	- 생활안전 업무 총괄, 안전도시 업무 등
	재난관리팀	- 재난관리 업무 - 민방위 업무 등
	안전관리팀	- 시설물 관련 안전관리 - 도로 관련 안전 등
	식품환경안전팀	- 환경안전 - 식품안전 - 물 관련 안전 등
	복구지원팀	- 재난안전사고 간접 복구 및 지원업무 (해양환경오염사고 업무 지원 포함)

5) 5만 미만 군

□ 기본 방향

- 5만 미만 군의 경우 5만 이상의 군과 마찬가지로 재난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1개의 과를 운영하거나 건설 등 다른 기능과 연계하여 1개의 과를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5만 이상 군의 경우 재난 및 안전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1개과를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함
- 담당(팀)의 경우 지역의 인구, 수요 등 지역적 실정을 고려하여 3개의 담당을 설치 운영하도록 함
 - 지역의 재난 및 안전 관련 수요를 고려하여 1개의 담당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3개의 담당은 생활안전담당, 재난관리담당, 안전관리담당의 설치 운영을 권고함
 - 1개의 담당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치 또는 미설치 할 수 있도록 하며, 3개의 담당을 설치 운영할 경우 다른 유사 기능의 담당과 연계하여 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함

□ 5만 미만 군의 재난안전조직 재설계 방안(예시; 장흥군)

- 장흥군의 재난 및 안전 관련 부서 현황
 - 장흥군의 경우 재난관리 기능을 건설기능과 연계하여 건설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기능은 여러 부서에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 장흥군의 재난 및 안전 관련 주요 부서는 다음과 같음

현행 재난안전 관련 부서	
종합민원처리과	건축물관리담당
환경산림과	환경지도담당
해양수산과	해양시설담당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재난관리담당
보건소	위생담당

○ 장흥군의 재난 및 안전 관련 조직 재설계 방안

- 장흥군의 경우 재난관리 기능과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1개의 독립적인 과를 운영하도록 권고
- 생활안전과를 두고 3개의 권고 팀과 안전 관련 팀 1개 등 4개의 팀을 두도록 함
- 장흥군의 재난안전조직 재설계 방안은 다음과 같음

과명	담당명	주요 기능
생활안전과	생활안전담당	- 생활안전 업무 총괄, 안전도시 업무 등
	재난관리담당	- 재난관리 업무 - 민방위 업무 - 복구지원 업무 등
	안전관리담당	- 시설물 관련 안전 - 도로 관련 안전 등
	식품환경안전담당	- 환경안전 - 식품안전 - 물 관련 안전 등

6) 특별시 자치구

□ 기본방향

-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재난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과를 운영하거나, 안전, 건설, 치수과리 등의 업무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많으며, 안전 업무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음
- 따라서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재난, 민방위, 안전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1개과를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함
- 담당(팀)의 경우 지역의 인구, 수요 등 지역적 실정을 고려하여 3+1(4개)의 담당을 설치 운영하도록 함
 -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일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특별시 본청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4개의 담당은 생활안전담당, 재난관리담당, 안전관리담당, 그리고 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1개의 담당을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함
 - 지역의 재난 및 안전 관련 기능 및 수요를 고려하여 1개의 담당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시 자치구의 재난안전조직 재설계 방안(예시, 서초구)

- 서초구의 재난 및 안전 관련 부서 현황
 - 서초구의 경우 재난관리 기능을 치수기능과 연계하여 재난치수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기능은 여러 부서에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 서초구의 재난 및 안전 관련 주요 부서는 다음과 같음

현행 재난안전 관련 부서	
도시디자인국 건축과	시설팀
건설교통국 토목과	도로시설팀
건설교통국 재난치수과	재난관리팀, 치수팀, 수방팀, 민방위팀
건설교통국 교통운수과	교통개선팀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

○ 서초구의 재난 및 안전 관련 조직 재설계 방안

- 서초구의 경우 재난관리 기능과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1개의 독립적인 과를 운영하도록 권고
- 생활안전과를 두고 3개의 권고 팀과 안전 관련 팀 1개 등 4개의 팀을 두도록 함
- 서초구의 재난안전조직 재설계 방안은 다음과 같음

과명	담당명	주요 기능
생활안전과	생활안전팀	- 생활안전 업무 총괄, 안전도시 업무 등
	재난관리팀	- 재난관리 업무 - 민방위 업무 - 복구지원 업무 등
	안전관리팀	- 시설물 관련 안전관리 - 도로 관련 안전 업무 등 - 치수 관리 관련 안전 업무 등
	식품환경안전담당	- 환경안전 - 식품안전 및 위생안전 업무 등

7) 광역시 자치구

□ 기본 방향

-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재난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과를 운영하거나, 안전, 건설, 시설관리 등의 업무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많으며, 안전 업무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음
- 따라서 특별시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에도 재난, 민방위, 안전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1개과를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함
- 담당(팀)의 경우 지역의 인구, 수요 등 지역적 실정을 고려하여 3+1(4개)의 담당을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함
 -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역시 일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광역시 본청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4개의 담당은 생활안전담당, 재난관리담당, 안전관리담당, 그리고 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1개의 담당을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함
 - 지역의 재난 및 안전 관련 기능 및 수요를 고려하여 1개의 담당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광역시 자치구의 재난안전조직 재설계 방안(예시; 대덕구)

- 대덕구의 재난 및 안전 관련 부서 현황
 - 대덕구의 경우 과 단위의 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은 생활안전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 업무를 자치행정팀에서 관리하고 일부 안전관리 업무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 대덕구의 재난 및 안전 관련 주요 부서는 다음과 같음

현행 재난안전 관련 부서	
자치행정본부	자치행정팀
생활지원본부	환경관리팀, 청소위생팀
도시건설본부	건설팀, 생활안전팀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 대덕구의 팀은 과단위임

○ 대덕구의 재난 및 안전 관련 조직 재설계 방안

- 대덕구의 경우 재난관리 기능과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1개의 독립적인 과를 운영하도록 권고
- 생활안전과를 두고 3개의 권고 팀과 안전 관련 팀 1개 등 4개의 팀을 두도록 함
- 대덕구의 재난안전조직 재설계 방안은 다음과 같음

과명	담당명	주요 기능
생활안전팀	생활안전담당	- 생활안전 업무 총괄, 안전도시 업무 등
	재난관리담당	- 재난관리 업무 - 민방위 업무 등
	안전관리담당	- 시설물 관련 안전관리 - 도로 관련 안전 업무 등
	식품환경안전담당	- 환경안전 - 치수관리 관련 안전 - 식품안전 및 위생안전 업무 등

V. 결 론

-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안전 관련 주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안전조직체계를 효율적으로 재구축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련 조직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난안전 관련 조직이 효율적으로 재난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설계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먼저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재난안전관리 조직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였고, 현황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재난안전관리 관련 조직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 현황분석 결과 재난안전 관련 부서의 명칭 및 인원이 매우 다양하였으며,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을 체계화하여 통합적으로 재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
- 둘째, 각 유형별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조직을 재설계 방안을 제시하였음
 -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조직을 행정 수요 및 인구를 고려하여 생활안전과와 재난안전과의 2개 과로 운영하는 방법과 생활안전과에 재난 기능을 포함하여 1개의 과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 1개 과로 운영할 경우 과의 명칭은 재난안전관리과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담당의 경우 생활안전과 관련해서는 생활안전담당, 안전도시담당, 시설안전담당, 환경안전담당, 식품위생담당 등의 설치 운영을 권고하였고, 재난관리의 경우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재난점검담당, 민방위담당의 설치 운영을 권고하였음

- 전체적으로 많게는 9개 담당, 적게는 4개 담당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구 및 행정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안전기능과 재난기능을 통합 또는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결국 기초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 기능을 통합적으로 조정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로 정밀한 조직 진단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서술적인 분석하였기 때문에 향후 재난안전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연구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음